

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2차(9월) 모집공고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요 >

- ◆ (지원예산) '18년 100억원
-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세무·회계 : '18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
 - 기술보호 :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 *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 ◆ (지원내용)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 ◆ (지원규모) 1만개사 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세무·회계 바우처'와 '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1만개사 내외 (예산소진 시 까지)	세무·회계	기장대행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연간 최대 100만원 * 총사업비의 약 30% 현금대응(자부담) 필요
	기술보호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	연간 최대 100만원 * 현금대응(자부담) 불필요

-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2 공통 신청 요건 및 제외 대상

□ 공통 신청 요건

- (공통)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중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최초공고일('18.7.6)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①-1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①-2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최초공고일('18.7.6)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②-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②-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회계(3페이지), 기술보호(7페이지) 각 부문을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확인

☞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18년 선정될 경우, '19년까지 2년간 지원 (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A)	창업기업 현금대응(B)	총사업비(C=A+B)
100만원	44만원	144만원

* 창업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현금대응)을 입금하여야 하며, 2년차('19년) 지원 시 동일하게 적용 예정
 ** 협약기간 중 '휴·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사업비까지는 인정하고, 이후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협약일로부터 세무·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 수수료 : 가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회계 관련 수수료
- 기타 : 세무·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기타 세무·회계 관련 비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
 ** 사업 선정 전, 세무·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9년 5월까지 지원예정

3 세무·회계 바우처

1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9,100개사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

< 연간 지원규모 >

지원규모	주관기관	비 고
9,100개사 내외 (예산소진 시까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성이 대표(또는 공동대표)인 창업기업 2천개사 이상 선정

*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서류)검토, 사업비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10월 7차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만 선택 가능

** 세무사·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주관기관으로 선택

2 세부 신청 자격

○ **공동신청요건**(공고문 2페이지)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지원 가능

< 세무·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

세부 신청 자격		관련 서류	
①	'18년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일반과세자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기타	홈택스 매출 관련 자료(5페이지 참고)
②	'간편장부', '단순·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서류 중 1개 제출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8. 9. (목) ~ 예산소진 시까지

*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기업) 순으로 매월 선정

< 신청 유의 사항 >

- ① '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
- ③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참여신청서 등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⑤ 세무·회계 바우처 선정 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 선정 후, 중도 변경도 불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⑦ 참여신청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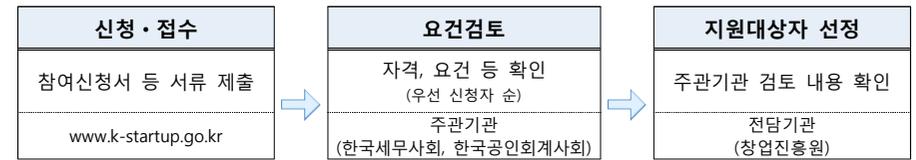
○ 신청서류 : 신청 시, 시스템 필수 등록 서류

구분	등록 서류	세부 내용						
1	참여신청서	한글 또는 워드 양식으로 작성(서명필수)하여 시스템에 등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질로 스캔 또는 캡처하여 시스템에 등록						
3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4	매출 확인 서류 * 각 창업기업은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기타)에 따라 우측 세부 서류 중 해당되는 1개를 제출		<table border="1"> <tr> <td>일반과세자</td> <td>'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td> </tr> <tr> <td rowspan="3">기타 (면세사업자 포함)</td> <td>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td> </tr> <tr> <td>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전체화면)</td> </tr> <tr> <td>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td> </tr> </table> <p>* 기타 유형의 경우 상기 서류 중 택 1 하여 '18년(0월~현재) 내역을 등록</p>	일반과세자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기타 (면세사업자 포함)	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전체화면)
일반과세자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기타 (면세사업자 포함)	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전체화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5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공동대표가 있는 창업기업에 한하여 서류를 작성(서명) 후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록						
6	법인등기부등본	해당기업에 한하여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						

* 참여신청서 불성실 작성, 서류 미제출 시, 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4 지원 대상자 선정

< 세무·회계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 요건검토 : 매월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및 세무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참여신청서 등 관련 내용 검토
- 지원대상자 확정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5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은행에 사업비 활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기한 내에 창업기업 현금 자부담을 입금하여야 함
-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 됨

4

기술보호 바우처

1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1,100개사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
 - '18년 선정될 경우,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지원규모 >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1,100개사 내외	기술자료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비용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기업)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임치, 가치평가)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휴·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19년)은 불가

- 지원내용 : 선정 후, 2년간 기술보호(임치·가치평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 **임치수수료** :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

· **기술가치평가** :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 사업 선정 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

2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공고문 2페이지)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8. 9. (목) ~ 예산소진 시까지

*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기업) 순으로 지원

< 신청 유의 사항 >

- ①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 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조기 마감 가능
- ③ 온라인으로 신청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오프라인의 경우 사전에 서류작성 관련 검토 필요
- ④ 공통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원 불가
- ⑤ 기술보호 바우처 선정 시, 세무·회계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 선정 후, 중도 변경도 불가

- 신청방법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또는 임치센터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 온·오프라인 신청절차 >

구분	세부 신청 절차
온라인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www.kescrow.or.kr) → ② 회원가입 및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③ 기술임치신청하기 클릭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⑤ 기술임치신청서 작성 ※할인항목 :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선택 → ⑥ 제출서류 업로드 → ⑦ 요건검토 및 승인처리(임치센터) → ⑧ 임치물 전송(1회 가능, 용량제한 2GB, 파일 최대 100개 전송 유의) → ⑨ 계약서 전자 서명 → ⑩ 임치증서 출력
오프라인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www.kescrow.or.kr) → ② 신청서·계약서·이용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제출 → ③ 지원대상 요건 검토(임치센터) → ④ 오프라인 방문계약(구로) 일정 협의 → ⑤ 오프라인 임치계약 체결 → ⑥ 구비서류·임치물 제출 및 봉인 → ⑦ 임치증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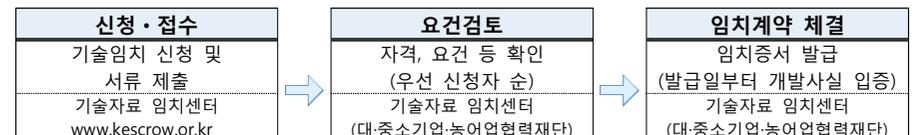
< 신청 시, 필수 등록 서류 >

구분	등록 서류	세부 내용	비고
1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임치센터 직접입력 또는 다운로드	통합하여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시스템 첨부 또는 직접제출	

*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정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4 지원 대상자 선정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 **요건검토** :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증빙서류 등 관련 내용 검토
- **수수료 지원** : 자격요건, 증빙서류 확인 이후 수수료 지원을 통한 임치계약 체결 및 가치평가 지원

5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통 유의사항

-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 관련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바우처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이 취소되고,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 관리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6 사업 신청 문의

□ 문의처

구분	문의처		전화
세무·회계	사업 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23, 36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6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www.k-startup.go.kr)		국번 없이 1357
기술보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484
	기술임치센터(시스템) 이용문의 (www.kescrow.or.kr)		

참고**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캐블링 및 베탱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1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